ZINUS

녹색구매방침

ZINUS INC.

ZINUS

제 1 조 (목적)

이 가이드라인은 주식회사 지누스의 국내외 법인의 녹색구매활동을 정의하여 시행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천연자원 보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사회공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① "친환경물품"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물품으로서 다음과 같다.

- ✓ 환경관련 인증 물품: 국내 및 해외 인증기관(공인/민간)의 환경관련 인증마크 또는 인증서를 보유한 물품
- ✓ 회사 선정 물품: 회사의 환경 개선활동 등으로 환경 영향을 저감하여 친환경성(재사용/재활용이 용이하거나 기존 동일 용도의 물품 대비 환경이나 인체에 영향이 적은 제품 등)이 있다고 구매담당자가 검토하고 승인한 물품으로 한다.

② "녹색구매"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물품을 우선 구매함을 말한다.

제 3 조 (적용범위)

이 가이드라인은 회사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, 부자재 구매활동과 관련한 업무에 적용한다.

제 4 조 (다른 규정과의 관계)

녹색구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5 조 (녹색구매 기본원칙)

① ESG 경영목표인 [지구의 행복], [고객의 행복], [직원의 행복], [지역사회의 행복]와 각 회사구매규정을 준수하여 녹색구매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환경보전과 천연자원 보전을 위한 녹색구매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물품 발굴과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

③ 구매하고자 하는 친환경물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급사 군을 확보하고 친환경물품의 구매가 가능한 경우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 6 조 (녹색구매 업무범위)

① 녹색구매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- ✓ 친환경물품 기준설정 및 타부서에서 물품구매 요청시 친환경 물품 우선 안내
- ✓ 물품 구매시 품질, 가격 이외에 친환경 물품 우대 검토
- ✓ 공급사에 대한 녹색구매 가이드라인 안내 및 친환경 물품 발굴

ZINUS

- ✓ 친환경 물품 구매실적 관리
- ✓ 구매 리스크 사전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구매업무 준법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한다.

제 7 조 (파트너사의 책무)

① 물품 계약시 환경관련 인증마크 또는 인증서 등 친환경 물품 해당 여부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.

② 물품 계약 후 공급 물품의 주요 환경정보 변경시 지누스에 고지해야 한다.

③ 공급 물품의 제조시 환경영향 저감을 노력하고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.

④ 그 밖에 지누스가 요청하는 녹색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야한다.

제 8 조 (파트너사 지원)

회사의 녹색구매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파트너사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① 결제 조건의 탄력적 적용

② 공급 물품의 환경영향 저감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및 친환경 소재 연계 자문